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관광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 관광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문화 홍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 정의 신설(안 제2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 확대 규정 신설(안 제4조)
-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사항 구체화 및 신설(안 제5조)
- 국립국어원 「한국 어문 규정」에 따른 문장부호(마침표) 삽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6. 03. 03.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2. 제안이유

-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 관광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 문화 홍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 정의 신설(안 제2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 확대 규정 신설(안 제4조)
-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사항 구체화 및 신설(안 제5조)
- 국립국어원 「한국 어문 규정」에 따른 문장부호(마침표) 삽입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이나 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주민참여 기반의 관광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에서는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에 대한 정의를 제8호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재정적” 지원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보조금, 활동비 등 재정적” 지원으로 구체화하였고, “평창사랑상품권” 지원을 신설하였음.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광 홍보 활동의 지원 근거와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2025. 4. 8.>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0
----------	-----

제출연월일 : 2026. 3. 3.

제 출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제안되었음.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관광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문화 홍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8호

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 확대 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항

다.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및 신설: 안 제5조제1항 제3호, 제4호

(기존)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개정) 3.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활동비 등 재정적 지원

(신설) 4.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지원

라. 국립국어원 「한국 어문 규정」에 따른 마침표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첨(비용추계서)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1. 20. ~ 2026. 2. 9.) 결과

- 의견 제출 1건: 관광정책과-2656(2026. 2. 10.)호

- 의견 검토 및 반영 내용: 관광정책과-2744(2026. 2. 11.)

의견제출 요지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국내 관광 트렌드는 ‘개별자유여행 (FIT)’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 또한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체감형 관광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별관광객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향후 중앙정부의 관광정책 및 국·도비 연계사업 추진 시 행정적 유연성과 대응력을 높여 평창군 관광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여부: 여 ○ 평창군수가 시행하는 체류 및 재방문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별관광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225(2026. 1. 16.)호]
- 3)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225(2026. 1. 16.)호]
-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2590(2026.1.16.)호]
- 5) 법제심사: 적정 [기획예산과-2839(2026. 2. 12.)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의결 [기획예산과-3436(2026.2.25.)호]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란 SNS를 활용하여 평창군 관광 자원 및 지역 문화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위촉한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사람
2. 군수가 시행하는 체류 및 재방문 관광 프로그램에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제1항제3호 중 “재정적”을 “보조금, 활동비 등 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란 SNS를 활용하여 평창군 관광 자원 및 지역 문화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u></p>
<p>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 ----- ----- ----- ----- -----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1. <u>군수가 위촉한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사람</u></p> <p>2. <u>군수가 시행하는 체류 및 재방문 관광 프로그램에 일정요</u></p>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 <신설>

4. (생략)
- ② (생략)

건을 충족하여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보조금, 활동비 등 재정적 --
4.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취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조례안명: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나. 관련조문: 조례 제4조 제2항(관광객의 유치 지원)

다. 비용발생 요인: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인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행경비 환급금 등 비용 필요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범사업(2026년 단년도 시행)
- 타시군 거주자의 평창군 관내 여행 경비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 (연 1회 지원 /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최대 20만원 환급)

나. 추계 결과

- 여행경비 환급금(모바일 평창사랑 상품권): 1,000,000천원
- 모바일 평창사랑 상품권 발행 수수료: 9,000천원
-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1명) : 30,000천원
- 온·오프라인 홍보비 및 사무관리비: 2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여행경비 환급금: 국비(30%), 군비(70%)
- 운영비: 군비(100%)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연락처	(033) 330 - 22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1,059,000					1,059,000
여행경비 환급금	1,000,000					1,000,000
운영비	59,000					59,000
자원 조달						
의존 자원	소 계	300,000				300,000
	보조금(국비)	300,000				3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59,000				759,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759,000				759,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